

방송통신위원회 속기록

회의명 :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회의일시 : 2018. 1. 24.(수) 09:30

장소 :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

참석위원 : 이호성 위원장
허욱 부위원장
김석진 상임위원
표철수 상임위원
고삼석 상임위원 (5인)

불참위원 : 없음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속기록

【 09시 30분 개회 】

1. 성원보고

- 이효성 위원장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성원 보고해 주십시오.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재적위원 전원이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2. 국기에 대한 경례

- 차중호 의안·정책관리팀장
 -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십시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3. 개회선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지난 회의록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2018년도 제1차 및 제3차 회의의 회의록과 속기록을 확인하고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회의록과 속기록에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동의하신 대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4-1. 서면회의 결과 확인

○ 이효성 위원장

- 그리고 제2차 및 제4차 서면회의 결과 제의된 <의결안건> 4건과 <보고안건> 1건이 원안대로 의결·접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회의록에 이의가 없으시면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접수하겠습니다.

4-2. 국회에서 요구한 속기록 제출 의결

○ 이효성 위원장

- 국회에서 2017년도 제51차 및 2018년도 제1차 전체회의의 회의록 및 일부 속기록 제출 요구가 있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비공개로 진행한 「한국방송공사 이사 해임 건의에 관한 건」, 그리고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감사 해임에 관한 건」의 관련 회의록 및 속기록은 그간의 선례를 참고하여 개인의 인적 사항이나 발언 위원의 성명 등을 음영처리한 후 열람형식으로 제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자료제출을 의결합니다.

5. 회의공개 여부 결정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회의에는 <의결안건> 4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안건들을 공개로 심의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회의는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심의를 들어가기 전에 장내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 (2018-05-016)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가> ‘위치정보사업자 신규허가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입니다. (주)콘텔라, 텔레나브코리아(유), (주)로드피아, (주)디엠엑스 등 총 4개 법인을 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고 아래의 허가조건을 부가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허가조건은 귀 법인은 위치정보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 조건은 귀 법인은 위치정보 서비스 제공시 해당 이용자에게 위치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귀 법인은 소요 설비 및 투자계획, 자금조달계획, 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보호계획, 시스템·네트워크 보안 및 장애대책 등에 관하여 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계획서 주요내용의 이행실적을 다음과 같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분석 및 재무, 시스템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계획은 매년, 위치정보의 관리적 보호 조치 계획은 반기별, 위치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계획은 반기별로 제출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2017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11월 13일부터 27일까지 허가신청 공고 및 접수를 하여 (주)콘텔라 등 총 4개 법인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신청을 하였습니다. 허가신청법인 주요현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결격사유 법인 여부 등에 대해서 조회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2017년 12월 13일 개최하였으며, 재무, 영업, 기술 각 분야별 전문가 9인으로 구성했습니다. 심사위원 세부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심사결과입니다. 심사 기준은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고시)에 따라 심사위원회가 위치정보사업 계획의 타당성 및 재무구조의 적정성, 위치정보사업 관련 설비규모의 적정성 및 기술적 능력, 위치정보 보호 관련 조치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총점 70점 이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의 경우 적격 판정을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주)콘텔라는 71.17점, 텔레나브코리아(유)는 72.49점, 식량로드피아는 73.48점, (주)디엠엑스는 71.86점으로 4개 법인은 적격으로 판단하고자 합니다. 세부심사 개요는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치정보사업 재신청을 한 3개 법인에 대해 주요 보완항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콘텔라는 작년 2차 허가신청을 접수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연도별 설비 투자 계획, 위치정보보호 조치 등이 미흡하다고 지적되었지만 이번에는 보완되었습니다. 텔레나브코리아(유)는 신청법인과 본사 간 역할 및 책임, 위치정보 보호계획 등 미흡사항에 대해 보완하였습니다. (주)로드피아는 자금조달계획, 위치정보 보호계획 등 미흡사항을 보완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허가조건은 의결주문과 같이 부가하고자 합니다. 향후계획은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위치정보사업자 허가 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매년 또는 반기별로 허가조건 이행 여부에 대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기술 발전에 의해 위치정보 산업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이번에 신규 허가받은 사업자들을 보면 대부분 차량 블랙박스나 아니면 네비게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내는 업체들 같은데 이럴 경우 디바이스 판매가 수익 모델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디바이스 판매가 아니고 블랙박스나 네비게이션을 통해 위치정보를 수집해서 차량 관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익모델입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관제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을 모아 나가는 형식입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회원정보를 모으거나 아니면 수집하는 방식들에 있어서 다수가 익숙치 않을 경우에는 개인이 직접 입력한 경우도 있지만 이를테면 개인정보 등록을 대행하는 경우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련된 보완책들도 논의가 있었습니까?

○ **최윤정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

- 현재 계획상 특별히 그렇게 위탁해서 하는 부분들이 계획상 들어 있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따로 심사내용에 들어간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수탁자에 대해서는 위탁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그 부분은 추가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분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사전에도 많이 논의가 됐기 때문에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05-017~024)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 등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8개 사업자에 대해 같은 법 제76조제1항 등에 의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고자 합니다. 조사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상통화 탈취를 위한 악성코드 유포·표적공격 등이

성행함에 따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주요 10개 사업자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여부를 현장조사하게 되었습니다. 10개 사업자 중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주)리플포유 1개 사업자 개인정보 유출 신고를 한 (주)야피안 1개 사업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래량이 상위인 8개 사업자는 기획점검 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총 10개 사업자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주요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통위와 KISA에서 작년 10월 10일부터 12월 28일까지 조사하였으며, 시정조치(안)에 대해 1월 4일부터 15일까지 사전통지하고, 사업자 의견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조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 10개 사업자 중에서 (주)두나무 등 8개 사업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이 확인되었으며, (주)비즈스토어 및 (주)비즈코인 등 2개 사업자는 조사기간 중 가상통화 거래서비스를 중단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상통화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피심인 8개 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유출경로 및 유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리플포유는 '16년 7월 26일자 SQL인젝션 공격 및 Cross Site Scripting 공격 로그를 확인하였으나 웹서버의 '응답코드' 로그가 남아 있지 않도록 설정되어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여부에 대해서는 확인 및 분석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주)리플포유는 95명의 가상통화 리플코인 약 313만여개가 불상자 소유의 전자지갑 주소로 이체된 것이 있었습니다. '16년 7월 26일이 되겠습니다. 이후 약 170만개가 또 다시 '17년 4월에 분실되었고, 종전에 엑스알퍼트레이드(주)에서 리플포유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10월 16일자에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현재는 리뉴얼 공지하고 거래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주)야피안의 경우에는 미상의 해커가 '17년 10월 4일 사전대입공격을 272번 시도하여 ID, PW가 일치한 1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ID, PW,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휴대폰 번호, 주소 등이 되겠습니다. '17년 10월 4일 코인 유출은 없었습니다만 (주)야피안의 경우 '17년 4월에 해킹으로 비트코인 3,831개가 분실되었고 사이트를 폐쇄했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또 현재는 사이트 해킹으로 출금지갑 17%가 분실된 후 거래를 중단했습니다. 작년 12월 19일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두나무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미설치·미운영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개인정보를 수집·동의하는 방법보다 동의·철회 방법을 어렵게 하여 정보통신망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리플포유는 취급자가 내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적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을 보관하도록 해야 하나 미보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고, 이용자 계좌번호 478건에 대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출력 복사 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쉘렛(주)는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이를 미적용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미운영하고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지 않고 운영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3개 항목 위반입니다. 또한 이용자 계좌번호 576건에 대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이야랩스는 취급자가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시 안전한 인증수단을 미적용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주)야피안은 개발자 및 퇴직자 4명의 접근권한 미말소, 접근권한 최소부여 원칙을 위반하고 접근권한 부여 및 변경·말소내역을 보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도 하지

아니하고 운영도 하지 아니하며,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최대 접속시간 제한 조치도 미흡하게 운영하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 고시 제4조제2항·제3항·제5항·제8항·제10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이용자 계좌번호 17,304건에 대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출력 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아서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위반하였습니다.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5,867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코빗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미설치하고 운영하지 아니하였으며,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미수립하고 운영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이용자 계좌번호 190,950건을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의 국외 미국 아마존 이전 시 이용자에게 미고지하여 정보통신망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코인원은 접근권한 변경 및 말소 내역 미보관, 비밀번호 작성규칙 미수립, 최대 접속시간 제한 미조치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고, 이용자의 계좌번호134,059건에 대해 암호화하지 않고 저장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 출력시 용도를 특정하고, 출력항목을 최소화하지 않음으로써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를 또한 위반하였습니다. 1년간 서비스를 미이용한 이용자의 개인정보 5,241건을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였습니다. (주)코인플러그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침입차단 및 탐지시스템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지 아니하여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였습니다. 위반사항 중 “음영”처리된 사항은 현장 조사기간 중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 의견 및 검토의견입니다. 피심인들은 위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주)리플포유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붙임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정조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두나무 등 8개사업자에 대해 위반행위 즉시 중지,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시정명령 이행결과 제출 등 시정명령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안)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조치위반과 관련하여 (주)두나무 등 8개 사업자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1,000만원을 기준금액으로 하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 관련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인 (주)리플포유·셀렛(주)·야피안·(주)코빗·(주)코인원 등 5개 사업자는 기준금액의 50%인 500만원을 가중하고, (주)두나무 외 7개 사업자는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여 감경대상에는 포함되나 최근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관련분야의 거래규모 및 매출액이 급증하고 있고, 이용자의 금전 및 가상통화를 보관하고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자로서 보다 철저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준수가 요구되므로 감경하지 않고자 합니다. 최종 과태료는 (주)리플포유·셀렛(주)·야피안·(주)코빗·(주)코인원에 대해서는 과태료 각 1,500만원을 부과하고, (주)두나무·(주)이야랩스·(주)코인플러그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위반과 관련하여서 (주)야피안, (주)코인원 등 2개 사업자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1회 위반에 해당되는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가중·감경사항은 없습니다. 세 번째로 개인정보 동의 철회조치 위반과 관련 (주)두나무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가 없기

때문에 1,0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하여 (주)코빗에 대해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처분받은 사실이 없어서 1회 위반에 해당하는 6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종적으로 (주)두나무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0만원, (주)리플포유는 과태료 1,500만원, 쉐릿(주)에 대해서는 1,500만원, (주)이야랩스에 대해서는 1,000만원, (주)야피안 2,500만원, (주)코빗 2,100만원, (주)코인원 2,500만원, (주)코인플러그 1,000만원 등 총 1억 4,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시정조치를 통보하고 향후 이행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4쪽을 보십시오. 뒤에도 제재수위 결정할 때 참고가 되는 것 같은데 (주)리플포유 유출경로를 보면 유출건수가 '확인 불가'로 나오지 않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그렇지요? 웹서버 응답코드 로그가 남아 있지 않도록 했는데 이것을 설정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주)리플포유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왜 확인이 불가합니까? 로그기록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로그기록을 외부에서 서버로 접속한 로그기록은 기록이 남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서버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응답코드가 정확하게 기록이 안 되도록 프로그램을 설계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침입은 있었으나 그 침입으로 인해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로그 기록이 남지 않도록 설계한 것은 사후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규명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제재수위 말씀하실 때 뒷부분에 '확인 불가'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내역 확인이 곤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제재할 때 이 요인은 반영이 안 되는 것입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저희가 개인정보 서버의 접속기록은 6개월 이상 보관하도록 정해져 있고, (주)리플포유에 대해서 보관으로는 과태료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개인정보를 유출된 사항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기에는 증거가 미흡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왜 이런 지적을 하나 하면 최근 조사를 보면 로그기록이 확인이 안 되어서 그에 대해서 우리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밖에 조치를 못합니다.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이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 기업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그기록이 없어서 책임규명을 못 했다, 이것은 안 됩니다. 그렇다면 로그기록 보관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책임을 더 강하게 부과하고 그 로그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분실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행보다는 좀 더 중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이 필요합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안전에도 사소한 것 같지만 가상통화, 가상화폐 용어가 2가지로 쓰입니다. 확인해서 동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사는 아무래도 최근에 가상통화 관련된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기획조사한 것인데, 이 결과를 보면 최고 수준의 보안기술인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해서 투명하고 안전하게 가상통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실제 조사해 보니까 정작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는 정말 기초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다수의 법규 위반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한 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황당하지요. 이번 사건을 심의하면서 작년에 '빗썸'이나 '여기어때' 개인정보 유출 그 사례의 데자뷔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서비스의 혁신을 가져오는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배려하고 또 장려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이 공통적으로 서비스 출시와 마케팅에만 급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작 이용자,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는 매우 취약하거나 소홀한 것으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사대상이 된 (주)코인원 같은 경우 제가 보고받기로는 보안전문가들이 창업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코빗, 코인원이 대부분...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런데 이러한 보안전문가들이 창업한 거래소마저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나 유효기간제 등 다수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사태가 이번에 발견됐습니다. 그동안 가상통화거래소 운영자 등 이 분야 관계자는 블록체인의 기술의 완결성 때문에 가상통화에 대한 해킹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전에 적시되어 있는 것처럼 (주)리플포유에서는 해커에 의해 리플코인이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빗'이라는 국내거래소는 작년엔 170억원 상당의 가상통화를 도난당해서 파산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해외 복수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가상통화 공급량의 10% 이상이 해킹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업체에서는 블록체인 기술도 버그가 활성화되면 해킹에 무방비가 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통화 해킹은 국민의 재산상 피해와 직결될 수 있습니다. 또 해킹에 노출되어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고 그리고 2차 피해 가능성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보호 조치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가상통화거래소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는 없었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신고된 것은 없었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해킹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수준만 본다면 언제든지 대형사고와 직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또 우리가 늘 대형 해킹, 개인정보 탈취사건에서 보면 북한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공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방통위의 조사, 시정조치를 계기로 가상통화거래소나 이용자들이 스스로 개인정보보호 의식을 높여야 합니다. 특히 사업자는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난해 영업이익을 개인정보보호 투자에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선 가상화폐에 쓰고 있는 용어를 '가상통화'로 통일하기로 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정식 화폐도 아니고, 그래서 법적 지위를 줄 수 없어서 가상통화로 쓰는 것 같습니다. (주)두나무 같은 경우 가장 이용자 수가 많다고 해서 대상이 된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용자 수는 자료에는 보고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얼마나 됩니까? 어떻게 파악이 됐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붙임 1>을 보시면 (주)두나무는 2017년 10월 16일부터 회원정보가 119만 7,795명 정도 됩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그렇고, 현재는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보고서에는 '16년 말 기준의 매출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16일부터 가상통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김석진 상임위원

- 불과 한 달 보름 만에 약 1,000억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그렇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금 1월인데 올해는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매출액이 기록될 것입니다, 물론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여덟 군데 우리가 기획으로 조사를 했는데도 '16년 말 기준으로밖에 우리가 매출액을 파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곳이 15억원, 적은 곳은 1억원 정도 밖에 매출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믿을 수 없지요. 지난 1년간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숫자의 매출이 늘어났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것이 대부분 8개 조사했던 업체들 전원이 다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위반으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사하지 않았던 나머지 거래소들도 이것보다 훨씬 더 하면 더 했지 위반사항이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과태료만 부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 했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지금 법상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가 미흡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주)두나무 등은 발생한 적은 없고 미리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전적으로 기획점검을 해서 미흡한 사항을 발견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조사를 아직 해 보지 않은 거래소나 또 매출액이 작년 매출액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아마 조사해 보면 대단히 많은 위반사실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상 우리가 가상통화에 대한 첫 번째 제재인데, 과태료 처분에 그친다는 것이 과연 시장에 엄중한 경고를 줄 수 있을지, 실효성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우려스럽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고작 수천억 원 매출을 올리는데도 과태료가 1,000만원, 2,000만원 정도밖에 매길 수 없는 이런 미비점을 빨리 조속히 정비해서 연초부터 다시 시작됐으니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규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어떤 부분들이 미비한 점이 있는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논란이 됐던 가상통화 거래와 관련해서 정부가 가상통화 실명제를 실시하고 또 투기와 불법에는 강력히 대응하지만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오늘 주요한 가상통화 거래사이트 운영사들의 개인정보보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상정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대응이라고 평가합니다. 고삼석 위원님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가상통화가 보안성이 높고 해킹이 어렵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 전 세계 가상통화 약 14%를 해커들이 탈취해서 피해액이 1조원이 넘어섰다고 블럼버그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가상통화거래소의 전산 시스템이 취약할 경우에는 이용자가 거래소에 맡겨서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의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 원장이 해킹으로 인해 위조 또는 변조될 위험이 있고, 암호키가 유실될 경우에는 가상통화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가상통화의 보관지갑이 위·변조되거나 유실될 경우에는 개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이번 사례에서도 일부 드러났습니다. 특히 거래사이트의 개인정보보호조치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가지를 묻고자 하는데 ㈜코빗의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보호조치를 위반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런 사례가 드러나지 않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코빗은 아마존 서버를 사용한 것으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서 그 정보가 아마존 서버로 넘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에 따라 넘어가는 경우라도 국외 이전 사실을 이용자들에게 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지행위가 없었습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해외 서버를 이전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전부 다 알려 주어야 한다는 것이고, 해외 서버 이전 시 자칫하면 미국에서도 전부 다 유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예.

○ 허 옥 부위원장

- 두 번째는 이번 현장조사 결과, 가상통화거래소의 개인정보 수준이 일반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에 비교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 천지현 개인정보침해조사과장

- 일반적인 온라인 사이트보다도 못한 업체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취급자의 비밀번호 관련 작성 규칙이나 침입탐지 차단 시스템 같은 경우에 정보통신제공자로서 기본이 되는 사항인데 그런 것들도 미흡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 허 옥 부위원장

- 이번 보고내용이 거의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상통화거래소들의 이런 개인정보 보호조치 부실로 인해 가상통화 보유자나 또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심인들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한 달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그런 점들을 철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셔서 짧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체들 상당수는 비밀번호 작성규칙도 지키지 않고 이용자 계좌번호 암호화도 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도대체 이 업체들의 변명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일반현황을 보시면 쉐릿(주) 같은 경우 종업원 수가 2명이고, 가상통화거래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스타트업처럼 우후죽순 개설되어서 운영되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 초기여서 어떻게 보면 아까 서비스 제공 또는 마케팅에만 치중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쪽에서는 투자를 소홀히 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기획·점검하고 언론에 발표할 내용도 가상통화거래사이트가 사실은 보안 조치가 매우 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보다 더 못한 보호조치한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거래사이트를 선별할 때도 정확히 이율을 판단해서 하도록 경종을 울리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전에 숙박업체도 개인정보가 유출되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물의를 야기했는데 특히 가상통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을 다루는 업체들의 보안 인식이라는 것이 다루는 양이나 중요도에 비해 너무 허술하다, 보다 강력한 경고를 하고 사전예방조치를

충분히 할 필요가 있는데, 아까 김석진 위원님도 말씀하였지만 이를 보완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번에 기획조사를 해서 이런 문제가 드러나서 그러는데 이것은 정기적으로 지속적인 점검을 계속하고 신규사업자들은 더 허술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점검을 불시에 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최근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오늘 심결이 되면 어떻게 알릴 예정입니까? 보도자료입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이번에는 보도자료를 상세하게 작성해서 위반행위를 8개 위반사업자의 위반행위를 그대로 적시해서 언론에 발표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다면 브리핑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국장님께서 브리핑을 하는 것이, 부담이 안 되시면 브리핑을 해서 또 언론의 관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가상통화거래소의 비중이 최대 전 세계 1일 거래량의 약 20%까지 됩니다.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가상통화에 대한 이용자들, 국민들,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져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상누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거래소의 보안 수준들, 신뢰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도 하지 않고 무작정 몰려오는 것입니다. 가상통화의 가치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뛰어들고 있는데 지금 국내 투자자들이 최대 300만명 가까이 되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고삼석 상임위원

- 언론에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그리고 다수가 20~30대 젊은층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거래소가 안고 있는 취약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했던 것들, 시정조치했던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야 합니다. 그 점 유념하셔서 국장님께서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 이효성 위원장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암호통화 또는 가상화폐는 그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또 그 존폐 문제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특히 최근에 우리 한국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조만간 종합대책을 구체적으로 발표하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위원회는 그런 문제에 대한 논란과는 상관없이 거래 사이트의 보안조치 문제, 특히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암호통화 거래 사이트에 대해 그 사이트의 속성상 해킹시도가 많아질 가능성이 크므로 거래소의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용자정책국에서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다.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05-025~035)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다>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안)을 <붙임>과 같이 의결한다’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K텔레콤, 이하 피심인①이라 한다, 케이티, 이하 피심인②라 한다, LG유플러스, 이하 피심인③이라 한다 및 관련 171개 유통점이 2017년 1월 1일~8월 31일 기간 중 도매 및 특수온라인 영업을 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및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조사배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오피스텔, SNS 등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 형태의 유통점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자신문 등 여러 언론사에서 집단상가, SNS 등의 불·편법 영업을 지적한 사례도 있습니다. 높은 장려금 수급을 위해 일부 유통점에 가입자를 몰아주고 참여 유통점이 그 장려금을 나눠 갖는 ‘연합영업’도 성행했었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과열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도매 및 온라인 유통점에서 20만원에서 40만원의 불법·편법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들이 반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주요경과입니다. 작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피심인①, ②, ③ 및 관련 유통점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에 대한 사실조사, 피심인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작년 4월에 판매점협회에서 ‘집단상가 불법 해결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 이와 관련해서 5월에는 이통통신 3사 마케팅 담당 임원에 대해 시장과열 경고 등 간담회를 개최해서 전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 5월 25일부터 이동통신 3사 및 관련 유통점이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해서 사실조사 통지하고 8월 31일까지, 1차 연장해서 9월 30일까지 사실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작년 12월 5일부터 22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이동통신 3사 및 유통점의 의견 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대상기간 선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작년 1월부터 피심인①, ②, ③이 이동통신 도매 및 특수온라인 영업부문에 대한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 지급상황이 지속되어 온 점, 조사범위 및 조사량이 많고 3개월 이상의 시일이 필요한 점, 시장과열 우려 상황이 잦은 행정 지도에도 중단되지 않고 향후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서 ‘17년 1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로 조사대상기간을 결정하였습니다. 조사대상은 '17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조사는 가입자 2,943,882건 중 이동통신 3사별 지역 간 균등 안배하여 163개 유통점 234,622건 가입자 전체 숫자의 8%를 샘플링하였습니다. 도매영업 및 특수 온라인 간의 심플 비중을 8:2로 하였습니다. 또한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유통점 방문시기별로 자료 확보량이 상이하고 유효표본도 적게 갖고 있습니다. 1.6%로 낮게 확보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 조사대상기간 그다음에 6월부터 8월까지 조사대상기간의 대표 표본 선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효표본수를 8% 이상 확보한 작년 1월부터 5월까지의 조사대상기간 중 피심인①, ②, ③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 부문 유통점에서 판매한 234,622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163개 유통점에서 174,299명(위반율 74.2%)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평균 293,172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중 피심인 ①은 83,600명에게 평균 295,622원을, 피심인②는 48,510명에게 평균 288,421원을, 피심인③은 42,189명에게 평균 293,781원의 과다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당 차별지원금 지급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 관련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163개 유통점 중에서 128개 유통점에서 139,037건 중 신규 17,577건에 230,233원, 번호이동에 99,987건에 330,411원, 기기변경 21,473건에 166,723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입유형 간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가입유형 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의 격차 수준은 피심인①은 176,369원, 피심인②는 145,011원, 피심인 ③은 168,493건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위반 현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실을 확인 하였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대리점과의 표준협정서 제2조제3항에 근거한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의 위탁판매 대가로 30만원 초과 68만원까지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각각 211개, 248개, 293개 대리점에 내려 보낸 것이 드러났고, 이러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전국 123개 유통점에서 117,228건, 전체 49.9%, 피심인①의 경우는 49.2%, 피심인②는 47.7%, 피심인③은 53.7%에 달하는 '부당한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행위가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 위반사항입니다. 피심인 관련 9개 판매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판매점 선입에 대한 사전승낙을 받고 그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여야 하나,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 서비스 영업을 한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위법성 판단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과 관련하여 163개 유통점이 다수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가 조사대상 유통점 다수에서 상당한 비율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원금의 차별 지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피심인 관련 128개 유통점이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 가입 유형 간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해당 유통점이 법 제3조 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유통점의 법 제3조제1항제1호 위반 행위가 163개 중 128개 유통점에서 상당한 비율로 드러난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와 관련하여 피심인①, ②, ③이 각각 211개, 248개, 293개 대리점에 과도하게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163개 유통점 중

123개 유통점에서 가입유형별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전승낙제 위반과 관련해서 피심인의 관련 9개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미게시하고 영업을 한 행위는 법 제8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정조치(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신규모집금지는 피심인①과 ③의 경우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점으로 볼 때,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이번 조사가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닌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에서 발생한 부분시장에 대한 위반행위이고, 제재 시 이동통신사보다는 영세한 판매점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제재의 부작용이 예상됨으로써 신규모집금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과징금 부과입니다. 법 제15조제1항·제2항에 따라 법 위반행위와 관련된 서비스 범위와 위반 정도를 고려하여, 관련매출액 및 기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먼저 관련매출액은 '17년 1월부터 5월까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가입자 모집 및 유지와 관련한 경우로서 표본조사에 따른 위반행위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를 고려하여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고, '17년 6월부터 8월까지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표본의 대표성이 낮고 객관적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 판단하여 정액기준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준금액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에게 각각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인 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을 및 부당차별유도 위반을과 시장에 끼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5월까지 적용하고, 정액기준금액을 각각 적용하고자 합니다. 시장에 끼친 영향 판단요소는 변동가입자 점유율과 관련시장 비중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피심인①, ②, ③이 제출한 서면의견 및 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관련매출액 산정시 적용된 초과지급 위반을만으로는 중대성의 정도 및 부과기준율을 판단할 경우에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하도록 한 규정에 어긋난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은 【별표1,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에 피심인①에게는 2.6%를, 피심인②에게는 2.5%를, 피심인③에게는 2.7%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 정액기준금액의 경우에는 각각 6억원으로 결정하여 기준금액을 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피심인①, ②, ③의 기준금액은 각각 263억 2,561만 1,000원, 139억 2,749만 2,000원, 154억 6,100만 4,000원 등에 해당되었습니다. 필수적 가중사항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정액기준금액을 산정한 경우, 위반기간에 따른 정액기준금액의 10%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피심인①, ②, ③에게 각각 6,000만원을 가중하고,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기준금액의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③이 4회에 해당되어, 기준금액 약 154억원의 20%인 30억 9,200만원을 가중하고자 합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필수적 가중을 거친 과징금은 각각 263억, 139억, 186억 등에 해당됩니다. 추가적 가중사항입니다. 추가적 가중·감경은 관련 고시에 따라 조사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를 종료하고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20% 범위 내에서 가중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①, ②, ③은 현장조사 기간 중 '차별유도 위반율'로 볼 때, 일부 시정효과는 있었지만 피심인②, ③은 피심인①에 비해서 '지원금 초과지급 위반율'에서 뚜렷한 시정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시장모니터링 결과에서도 각각 5주간, 4주간 시장과열 이유로 집중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어, 조사기간 중에 위반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심인 ②, ③에게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최대 20%의 1/4인 5%를 각각 가중하고자 합니다. 추가적 감경사항입니다. 동 법률의 자율준수를 위해 소속 임원·종업원 등에게 교육프로그램을 도입·운영하는 등 1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피심인①, ②, ③이 최근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간 피심인의 임직원이 참여하는 합동상황반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4월 중 13일, 9~11월 중 60일 등이 되겠습니다. 유통점을 자율 관리·감독·교육하는 등의 노력을 취한 바 있고, '17년도 이동통신부문 이용자보호 업무 평가에서 우수 이상의 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확인하게 취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향후 장려금 가이드라인 준수 등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비정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근절방안 등을 진술·제출한 바 있어서 이를 종합하여 피심인①에게는 필수적 가중을 거친 금액에 20%를, 피심인②와 ③에게는 각각 15%를 감경하고자 합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추가적 가중·감경을 거친 과징금은 각각 211억 848만 8,000원, 125억 8,874만 2,000원, 167억 5,188만 3,000원에 해당합니다. 최종적으로 과징금 가중 및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①에는 211억원, 피심인②에는 125억원, 피심인③에는 167억원의 과징금을 총 3사 합해서 503억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유통점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163개 유통점에 대해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 명령 받은 사실의 사업장 공표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과태료 부과입니다. 공시지원금 초과 관련해서 지원금 초과 지급을 1회 위반한 156개 유통점 중 13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 각각 150만원을 부과하고, 그 외 143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함과 동시에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의 50%를 감경하여 각각 기준금액 그대로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원금 초과 지급을 2회 위반한 7개 유통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의 정도가 과중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함과 동시에 조사 직전 위반자료 제출에 협조하는 등 위법상태를 자진하여 해소하는 등 노력이 인정되므로 기준금액 50%를 감경하여 각각 2회 위반 기준금액 그대로 3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차별 지원금 지급 관련된 사항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이것은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에 해당되어서 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사전 승낙제 위반과 관련해서는 판매점 선임에 대한 사전승낙을 위반한 9개 유통점에 대해 1회 위반에 해당하는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171개 유통점 위반내역 및 과태료 부과(안)은 <붙임 2>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심인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붙임 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지난 19일입니까? 법원 2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에서 장려금 지급하는 행위와 차별적인 지원금 지급 유도 행위 간의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패소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로 혹시나 이동통신사에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경우에 이번 같은 경우 대비가 되어 있습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 말씀하신 1월 19일 아이폰 대란과 관련해서 형사소송 이통3사 임원 고발 건과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2014년 10월경 이동통신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되고 시장을 안정할 목적으로 단 3일간 조사에 정액과징금을 부과하고 동시에 이통3사의 임원을 함께 형사고발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장려금 지급과 차별지원금 지급 유도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인과관계 또는 거기에 대한 증빙자료가 부족했다는 것이 지적되어서 이번 형사소송 1심에서는 패소를 하였습니다만 1심 판결에도 동일한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조사할 때 그것을 고려해서 장려금 지급과 차별 지원 유도와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인과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보장 조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을 대비해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제재를 할 때 이동통신사가 내려 보내는 장려금, 유통점에 보내는 장려금 30만원 정도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가이드라인 30만원을 지킨 경우도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제재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예, 맞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이통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켰는데도 이것이 시장 과열행위를 부추긴 유도행위로 보느냐 하는 데 대한 피심인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을 초과지급한 행위의 대부분이 이통사에서 장려금 30만원 이상 내려 보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일부가 30만원 미만에 해당되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고의 과실이 없다고 해서 면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대부분 30만원 초과 장려금의 영향을 받아서 30만원 미만의 장려금에 대해서도 불법지원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해당되기 때문에 간접적 유도행위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실 부분에 대한 문제로서 30만원 미만을 제외해 주는 것은 오히려 30만원이라는 장려금을 지침으로 인해 다른 불법행위를 오히려 조장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해 주기가 곤란하다고 판단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우리가 어떤 모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우리가 시장에 권고하는 것인데 그 가이드라인을 지켰어도 유도행위를 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징금을 매기는 기준으로 삼는다면 가이드라인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4월과

5월 16일까지는 평균 장려금이 4월에는 29만원, 또 이쪽 5월 16일 자료를 보면 29만 7,000원 이렇게 가이드라인 30만원 이하로 낮춰서 내려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통사의 불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매년 단통법이 개정되어서 시행된 이후에 시장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되어서 이통사에 대한 과징금을 매긴 것이 액수가 아주 적었습니다. 2014년 단통법 이전에도 수백억 씩 매년 과징금을 부과해 왔습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인데 단통법이 일몰제로 조항이 없어진 부분도 있어서 이번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이것을 개선해 보는 것이 어떤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매년 이렇게 수백억 씩 이통사에 과징금을 매기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것을 지켜지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이 아니라 고시나 시행령 쪽으로 장려금의 규모를 법제화시킬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것을 준수하게 되고 우리가 과징금을 수백억 원씩 기업들이 부담하게 되는 것을 줄여줌으로써 투자를 유인하는, 시장을 위축시키지 않는 이런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수백억 원씩 과징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법제화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 단말기유통법상에서는 이통3사나 대리점, 유통점이 이용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 지급 수준에 대해서는 공시하도록 되어 있고, 공시한 사항을 초과해서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가입유형별 차등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법정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또 대리점과 유통점 간의 장려금 지급 규모에 대해서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유통점, 대리점이 평균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약 30만원 정도가 된다, 필수 경비가 3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을 초과해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편법지원금 또는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한 행위로 보고 판단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려금에 대해서, 사업자와 사업자들이지 않습니까? 장려금 지급 규모를 법에 명시하는 것이 저희가 단속하거나 제재하기에는 용이하지만 또 사업자 간 영업의 자유를 또 지나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통3사 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좀 더 깊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사업자 의견이 있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규제 감독기관이 제재만 능사로 볼 것이 아니라 기업이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뺏어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우리가 정책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세계 최대 IT 박람회라고 하는 CES를 참관했는데 정말 세계가 숨 가쁘게 엄청난 눈부신 속도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또 거기에 대한 투자도 숨 가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IT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이통사들도 5G 투자도 많이 해야 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주도해야 하는데 수백억 씩 기업에 부담을 주고 또 거기에 제도적으로 개선책을 갖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면 “우리는 규제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이통사들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통신요금제도 낮출 것을 정부에서 요구하고 있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매년 수백억 씩 과징금을 매길 것이 아니라 기업들이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 줘서 과징금은 되도록 내지 않게 만들어야지요. 매년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기업이

뻘어나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나가자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는데 법제화는 사실상 현재로서 어렵다는 말씀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용일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참고로 말씀하신 내용 중 장려금이 30만원 미만이 있었다는 부분은 사전에 모니터링할 때 전체 시장에 대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실제 조사한 결과 1월, 5월 사이에 23만건에 대한 부분은 장려금 30만원 이상이 60%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평균 장려금은 4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김석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들 상당 부분 공감이 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나 제재들은 우리가 상당히 경계해야겠지만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에 대해 사업자들의 상황만 가지고서 묵과하는 것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과거 단말기유통법 시행 전에 보면 예를 들어 2013년 같은 경우 두 번에 걸쳐 과징금 규모가 상당히 나왔습니다. 이통3사의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과 관련해서 역대 최대의 과징금이었을 것입니다. 2013년 12월에 1,064억원이 부과됐고, 그다음 규모로는 2013년 7월에 670억원이 부과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하는 이 건은 조사기간이 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관련 매출액이 상당한 규모가 되고, 그에 따라 과징금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번 경우는 특수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에는 과징금 규모가 100억원 이내 였습니다. 제일 많았던 것이 2015년 3월 SKT가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유도해서 SKT에 한해서 235억원을 부과한 것 외에 전부 50억원 미만이었습니다. 지난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3년 반 이 기간을 돌이켜 보면 금액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왜 이렇게 높았냐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이것은 결코 과도한 규제나 제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기본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 확립, 이용자 권익보호라는 공적책임, 그리고 공공성을 구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사대상기간으로 설정했던 2017년 1월부터 5월이 어떤 기간이었습니까? 탄핵 정국, 대선 정국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경고도 하고 주의도 했습니다. 즉, 시장이 매우 과열되지는 않지만 혼탁한 상태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야 하고 이용자의 권익, 즉 차별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자들이 이러한 정치적 과도기 상황에서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 동안 계속해서 위법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제4기 방통위가 구성된 다음에 조사대상기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1월

부터 5월까지, 그리고 6월부터 8월까지 또 다시 조사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맞지요? 왜 조사기간을 계속해서 길게 가져가셨지요? 말씀해 보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말씀하신 대로 작년 초의 상황은 갤럭시 S8 출시되고 또 방통위 제4기 구성되기 이전, 특히 집단상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24시 등 떼다방 식으로 운영하는 등 가입 전체 채널이 아니라 집단상가 채널, 온라인 채널, 일부 SNS 이런 커뮤니티 채널에서 불법·위법행위가 지속되었습니다. 다른 것보다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지적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도매와 온라인 영업에 한정하되 1월부터 5월까지 잡았고, 대신에 1월부터 5월까지 조사하려다 보니까 조사량도 많고 범위도 넓으며,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예상되어 조사대상 시점을 8월 말까지 잡았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그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하기 위해 조사기간을 늘려 잡은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말부터 8월 초 제4기 방통위가 구성될 때까지 4개월이 사실상 방통위 공백상태였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오히려 규제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면 최소한 이통3사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과열을 예방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심결 건이 과도한 규제, 제재다, 이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동의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번에 심결하는 데 있어서 SKT는 위반 주도 사업자를 선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합니다. 실제로 이통3사가 중심이 되는 자율규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 집중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기간 동안 SKT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KT와 LGU+를 보면 집중모니터링 지정이 KT가 5번, LGU+가 4번입니다. 그리고 경고도 KT, LGU+는 각각 2회입니다. 물론 위반율이나 초과지급 평균 금액들이 대동소이하지만 시장을 혼탁하게 만든 사업자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선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번에 그런 위반행위 주도사업자, 이것을 선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통3사가 위반율이나 초과지급 평균액을 따져 보면 3사가 거의 비슷한 위반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자나 시장점유율 감소 등을 토대로 봤을 때는 위반행위의 주도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다, 다만 저희가 추가적 가중 사유로 봤을 때 피심인① SKT의 경우에는 조사 착수 이후에 정부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자중하는 상태를 보였고, 나머지 KT, LGU+는 제대로 시정이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5%를 가중한 사유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주도사업자 여부에 대해서는 반영하지 않았지만 가중사유로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고삼석 상임위원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 또 의견 있으십니까?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하나 여쭙 보겠습니다. 이번에 사무처에서 검토하시면서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닌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을에서 발생한 사항을 조사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제재할 경우에 영세 판매점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 부분 제가 어떤 것을 여쭙보냐 하면 신규모집금지를 제외 했다는 것을 여쭙보는 것입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동일한 위법행위가 누적되었을 경우에 신규모집을 금지할 수 있는데 조금 전에 했던 이유 때문에 이번에 신규모집금지는 심결 내용에서 제외하겠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모든 영업점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지 않는 한 동일한 위법행위가 누적되어도 결국 신규모집을 금지한다는 조처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신규모집금지는 극약처방입니다. 현 시점에서 이동통신시장 상황을 보면 상당히 안정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규모집까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과징금 및 시정명령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제가 여쭙보는 것은 이번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앞으로라도 시장이 과열될 경우에는 이런 논리를 들이대서, 예를 들어 전수조사가 아니고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니고 일부 도매 및 온라인 영업부문을에서 발생한 것, 또 판매점 피해 우려 이런 논리로 적용하면 영원히 신규모집금지 라는 조치는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만약에 그런 상황이 있으면 이런 논리 구성으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다 좋은 말씀이었는데 한 가지 장려금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우리가 제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도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달라서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해 여쭙 보겠습니다. 장려금이라는 것이 원래 대리점·판매점 소요경비로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국은 우리가 제재하는 것은 30만원 미만의 장려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기본 소요경비로 쓰지 아니하고 불법지원금으로 변형해서 썼다는 것 때문에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예, 그렇습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래서 장려금 가이드라인인 30만원 미만을 썼는데도 그렇게 하는 것은 과중한 것 아니냐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목표가 이통사들의 불법행위를 최대한 줄여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심결 내용에 나와 있는 재발방지 대책의 경중에 따라 이번에 차등 적용한 것은 저는 대단히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욱 부위원장

- 먼저 장기간 조사와 광범위한 자료 분석을 통해 심결 안건을 준비한 사무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이번 위반행위 시정조치 건과 관련한 쟁점 중 하나가 단말기유통법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5항 위반행위의 대부분이 이통사가 장려금 30만원을 초과 지급해서 발생한 적극적인 유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사무처 입장입니다. 반면에 피심인 측은 유통점의 위반행위에 대해 이통사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해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이기 때문에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로 판단해서 감경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의 근거로 앞서도 거론됐습니다만 지난 2014년 11월에 이른바 아이폰 대란 건에 대해서 지난 '16년 11월 법원의 1심 판결 그리고 올해 1월 19일 2심 판결에서 방통위가 패소한 것을 들고 있습니다. 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위의 판결은 단말기유통법 제9조제3항 위반에 대해 동법 제20조제2항제3호 별칙조항에 따라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고발을 하는 것에 대한 판결이었습니다. 단말기유통법의 입법 목적은 이용자에 대한 차별적이고 또한 불투명한 단말기 지원금에 대해 그리고 이통사들의 고가요금제 유지, 제조사들의 프리미엄폰 판매, 이동통신 유통점들의 고액의 리베이트 추구 행위로 인해 실질적인 일반 소비자들의 권익이 철저히 배제되고 침해되고 있는 것을 해소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통사의 유통점들이 장려금과 혼합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일부 소수의 고객들은 큰 혜택을 보는 반면에 침묵하는 다수는 후생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이동통신시장의 독특한 구조 전체와 문제점 그리고 이를 해소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노력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이 종합적으로 보지 않고 단통법의 문헌적인 해석과 판단에 그쳤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법원의 이통사 장려금 지급행위와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행위의 상관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본 판결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은 무죄 판단의 근거는 입증이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사무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한 상관관계를 입증하려고 대단히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통사 장려금 정책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는지 그 유형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면 우선 대리점에게 이통사에서 장려금 지급을 제안할 때 특정 영업조건을 따르는 것으로 표준협정에 의해 명시되어 있고, 그러면 또 대리점은 이통사에서 받은 장려금을 그대로 판매점에 내려 보내서 유통하는 구조인 것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통사는 장려금 정책을 함에 있어서 일주일, 한 달 또는 하루 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전, 오후, 오후 6시, 7시, 8시 이렇게 시간단위로 문서의 행위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메일 지시, 카톡 지시, 구두 지시 등의 방법으로 특정시간에 특정대리점에, 유통점에 지시한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통사가 대리점의 장려금을 평상시에 30만원 정도 주다가 특정 시점에 50만원이나 그 이상 올린다는 것은 대리점 및 판매점에게 차별 지원금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런 사항이 과거에는 연결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지만 아이폰 대란 이후 형사사건 소송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 입증 노력을 해서 그 관계를 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공문 형식의 문서나 아니면 이메일이 아니라 카톡으로도 수시로 구두로도 그런 지시를 한다는 것은 장려금 제안이나 지시가 대리점 혹은 판매점들이 이통사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수직적인 구조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련되어서 지금 제대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동통신사들이 영업점이나 판매점의 개별적인 불법행위이지, 이통사의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핑계이고 어떤 면에서 보면 관리의 부실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따라서 이동통신사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가 심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심결 과정에서 조사 대상 영업부문의 시장 위반율이 과다하게 계상되었다, 즉 특정 시장에 관련된 위반율이 전체 영업에 대한 ARPU로 매출액이 과다계상된 것이 아니냐, 그에 따라서 위반율이 그렇게 높아지게 되면 결국 부과기준율도 높아진다는 것이 피심인들의 주요 주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관해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보고 그것을 수용한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저희가 제3기 방통위에서는 최고 높은 위반율 위주로 부과기준을 관련 매출액을 산정할 때 했습니다만 이번 제4기 방통위에서는 위반율 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까지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위반율이 이통3사에서 집단상가, 온라인 채널의 경우에는 위반율이 다소 높다, 그것 위주로 조사했기 때문에 위반이 많은 사업자를 조사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1월~5월까지 표본을 할 때에는 일반 로드숍이나 집단상가, 온라인 채널을 고르게 분포를 대표적으로 했고 전체 가입자 수 8% 정도를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유효하게 조사했다고 생각합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그리고 그 이후에 6월~8월까지의 정액 책정을 받아들인 것이지요?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표본도 적고 유통점마다 조사 시점도 달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해서 정액과징금으로 산정했음을 말씀드립니다.

○ 허 욱 부위원장

- 조사대상인 일부 시장에서 3개월 이상이 조사대상인 경우에 중대성의 정도 판단을 위한 조정위반율 산출관계를 개선했다는 점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 등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 또 시장의 본질적인 왜곡 여부에 따른 시장의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한 중대성 판단을 위한 조정 위반을 도출 방식도 새롭게 마련한 것은 규제행정의 합리화를 위한 전향적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경쟁질서의 저해 정도를 단순히 위반율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 위반사업자의 시장 주도 여부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시장 안정화 및 이용자 보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한 방통위의 재량적 행정행위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했다고 평가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 사무처 노력을 굉장히 높게 치하하고 보고된 원안에 대해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간단히 해 주십시오.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본사에서 유통점에 내려 보내는 장려금 수준과 관련하여 예를 들어 '의도적으로 마케팅 정책에 의해 위반행위를 유도했다', '아니다 과실이다' 이것이 큰 쟁점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3년 반 동안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법 위반사례를 보면 물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금전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또 잘못된 대리점, 유통점에 대해 패널티를 주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정상적인 인센티브나 패널티 정책을 넘어서 이렇게 위반행위를 유도하게 하는, 어쩔 수 없이 유통점에서는 법을 위반하게 만드는 마케팅 정책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판단컨대 유통점에서 과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들은 철저히 본사의 마케팅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유통점에서 지원금 초과 지급여부는 결국 본사의 마케팅 정책이라는 독립변수에서 움직이는 종속변수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면 쪽 위반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 건마다 이것이 과실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이통사 본사의 의도적인 마케팅 정책에 의한 위반이냐를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기존 조사했던 사안들을 쪽 보면 팩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사의 마케팅 정책과 유통점들의 지원금 초과지급이나 차별 지급 이러한 현상들 간 인과관계가 나올 것입니다. 상관관계든 인과관계든 어떤 것들이 나오겠지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감 정책, 즉 패널티 정책으로만 이것을 개선하겠다고 나오는데 인센티브 정책도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조사해 보면 어떤 것이 나오니까? 지금 큰 대리점이나 영업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쉽게 말해서 다단계처럼 해서 가입자를 모아서 한 곳에 몰아줍니다. 그렇게 되면 일정 정도 기준치 이상 올라가면서 인센티브가 훨씬 커집니다. 그것을 또 나눠 먹는 구조가 됩니다. 이통사 본사에서 이것을 모를까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쪽 그동안 이통사 본사의 마케팅 정책과 그에 따라 유통점들의 지원금 초과 지급이나 법 위반사항들의 관계들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것이 가능한지 경제학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한번 정도 분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알겠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위원님들 여러 자세한 논의를 하시느라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한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업에서 영업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에서 중요한 본질적인 점은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력 있는 품질이나 가격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지원금, 장려금 등으로 영업경쟁에 치중하는 것은 사양산업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통신사업은 누가 봐도 미래가 창창한데 영업경쟁에 치중하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앞으로는 우리 통신사들이 영업경쟁보다는 품질과 가격경쟁을 하도록 관련부서에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내용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라. 이통3사 법인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2018-05-036~042)**

○ 이효성 위원장

- <의결사항 라>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법인영업 및 대형유통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에 대하여 김재영 국장 보고해 주십시오.

○ 김재영 이용자정책국장

-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K텔레콤, 이하 피심인①이라 한다, KT, 이하 피심인②라 한다, LG유플러스, 이하 피심인③이라 한다 등 이동통신 3사가 이동통신단말기를 법인영업 형태로 판매하면서 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여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와 삼성전자판매(피심인④)가 삼성 갤럭시S8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를 심의·의결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④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에서 갤럭시 S8+를 판매하면서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작년 8월 25일 신고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서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해 이동통신단말기를 법인형태로 판매하면서 단말기 공시지원금을 초과 지급하였다고 언론 보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작년 9월 11일~30일까지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판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고, 작년 12월 21일~1월 9일까지 시정조치(안)에 대한 이동통신 3사 및 삼성전자판매(주) 의견을 조회한 바 있습니다. 사실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대상은 <표>를 참고하시고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 초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법인영업과 관련해서 조사 대상기간 중 법인영업을 통하여 판매한 31,379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피심인①, ②, ③이 31,379건이 되겠습니다.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①의 경우에는 평균 258,400원, 피심인②는 536,240원, 피심인③은 495,200원을 각각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심인④의 대형유통점 영업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8월 중 갤럭시 S8 판매건 122,816건의 판매자료를 분석한 결과, 7,698명의 가입자에게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를 평균 309,362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부당한 차별지원금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법인영업과 관련하여 피심인①은 258,400원, 피심인②는 536,240원, 피심인③은 495,200원의 가입유형별로 동일하게 지급되어 부당하게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피심인④의 대형유통점 영업과 관련해서는 신규 437건에 평균 350,436, 번호이동 2,882

건에 평균 352,614원, 기기변경 11건에 241,082원 등 총 3,330건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와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피심인④의 대형유통점 영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7년 4월~8월 중 피심인①, ②, ③이 피심인④에게 갤럭시S8 단말기 위탁판매 대가로 30만원 초과 최대 50만 5,000원까지 과도한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한 건수가 7,189건이었으며, 그중에서 40만원 이상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장려금은 주로 기기변경 4건, 가입자모집에 비해 번호이동 1,830건 가입자모집에 더 많이 집중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차별 지원금 지급유도 장려금 지급으로 인해 가입 유형 간 3,324건의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을 확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법성 판단입니다. 관련 법령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법인영업과 관련하여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한 사항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법인영업을 통해 각각 삼성생명보험(주), AXA손해보험(주), 신한카드(주)에 공시지원금의 100분의 115를 초과하여 지급한 행위는 단말기유통법 제4조제4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④의 대형유통점 영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먼저 공시지원금 초과 지급과 관련하여 피심인④가 일부 이용자에게 공시지원금 100분의 115를 초과 지급한 행위는 법 제4조제5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피심인④의 법 제4조제5항 위반 행위의 건수를 보면 피심인① 2,820건, 피심인② 2,758건, 피심인③ 2,120건 등으로 나타나므로, 피심인①, ②, ③이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지원금 차별 지급과 관련하여 피심인④가 가입유형을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행위는 법 제3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고, 피심인④의 위반행위 건수가 피심인①의 경우에는 2,592건, 피심인②의 경우에는 386건, 피심인③의 경우에는 352건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①, ②, ③이 위반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 유도 사항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이 피심인④에게 과도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피심인①의 경우에는 2,591건, 피심인②은 385건, 피심인③은 348건을 지급함으로써, 피심인④가 가입 유형별로 지급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한 것은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급하도록 유도한 행위로서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정조치(안)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법인영업과 관련하여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신규모집금지와 관련하여 피심인③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점으로 볼 때, 신규모집금지 적용 요건에는 해당되나,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닌 법인시장에서 일부 발생한 사항이고, 피심인③의 법인영업건이 총 158,277건 중에서 위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은 1,353건으로 0.8%로 매우 낮다는 점, 특정 법인에 한정하여 발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규모집금지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 사항입니다. 법 제15조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피심인①, ②, ③별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4%까지 부과기준을 적용이 가능하며, 저희는 피심인①, ②, ③의 위반율이 100%이기는 하지만 법인영업 중 위반행위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고, 피심인①은 4.5%, 피심인②는 1.1%, 피심인③은 0.8%로 매우 낮습니다. 위반행위가 특정법인에 한정되어 발생하여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본질적이지는 않다는 점, 위반행위가 광범위하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심인①, ②, ③에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부여하며, 각각 2.9%씩 동일하게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피심인①, ②, ③의 기준금액은 각각 2억 2,345만원, 그다음에 1,068만원, 1,816만원

등에 해당되었습니다. 필수적 가중·감경 사항은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과징금은 피심인①에 2억 2,340만원, 피심인②에 1,060만원, 피심인③에 1,810만원을 최종 부과하고자 합니다. 피심인④의 대형유통점 영업과 관련해서 피심인①, ②, ③에 대해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시정명령 이행계획서 제출, 시정명령 이행결과 보고를 명령하고자 합니다. 신규모집 금지와 관련해서 피심인①과 피심인③의 경우에는 동일한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된 점으로 볼 때, 신규모집금지 요건에는 해당되지만 앞서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동통신 전체 시장이 아니라 부분시장, 대형유통점 1개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이고, 피심인④의 위반행위 기간 중 피심인④의 가입 규모가 이동통신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7%로 미미하며, 피심인④의 위반율이 6.2%로 매우 작은 점을 고려할 때, 제재 시 소비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규모집금지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과징금 부과사항입니다. 법 제15조 및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에 따라 피심인 ①, ②, ③별 관련매출액을 토대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4%까지 부과기준을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심인①, ②, ③의 위반행위 위반율이 6.2%로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피심인①, ②, ③의 전체 가입자 중 피심인 ④가 차지하는 가입자 비중 3.7%가 매우 낮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점을 고려하여 피심인①, ②, ③에게 각각 1%, 1.2%, 1.2%의 부과기준율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피심인 ①, ②, ③의 기준금액은 각각 2,691만원, 3,063만원, 2,453만원에 해당될 것입니다. 필수적 가중 사항입니다. 관련 고시에 따라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행위의 4회 횡수부터 20%씩 가중하도록 규정한 바, 피심인③이 4회 위반에 해당되어, 기준금액의 20%인 490만원 정도 가중하고자 합니다. 필수적 감경 및 추가적 가중·감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과징금 가중·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피심인①에 2,690만원, 피심인②에 3,060만원, 피심인③에 2,940만원을 최종 부과하고자 합니다. 피심인④에 대한 시정조치(안)입니다.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즉시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령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과태료는 공시지원금의 초과 지급 위반건수가 7,698건에 이를 정도로 위반행위가 가중한 점을 고려하여 기준금액의 50%를 가중하여 1회에 해당하는 750만원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하나의 행위로 2개 이상의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과태료 부과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피심인 제출 의견 및 검토의견은 <붙임 3>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쳤습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되, 이 사안이 비교적 단순하고 경미한 점을 고려해서 짧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 허 옥 부위원장

- 말씀하신 대로 <다> 안전과 유통 채널은 다르지만 유사하다고 봅니다. 피심인①, ②, ③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서 관련 매출액 산정 시 피심인의 의견을 수용해서 전체 가입자 대신 법인 가입자의 ARPU와 평균 가입기간을 적용한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부과 기준율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본질적이거나 광범위하지는 않지만 위반율이 높은 점을 고려해서 중대한 위반행위 중 최대 부과기준율을 적용한 점도 매우 적절하다고 봅니다. 또한 피심인④에 대한 시정조치(안)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의견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습니다.

7.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오늘 상정된 안건 처리는 이것으로 마쳤습니다. 다른 논의사항 있으십니까? 김석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김석진 상임위원

- 오늘 0시부터 KBS 고대영 사장의 직무가 종료가 됐고 해임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새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MBC에 이어서 또 KBS 사장이 강제퇴임을 당하고 소위 공영방송 물갈이가 완료되었다는 보도를 보고 공영방송의 앞날을 걱정하는 착잡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여기에 언론노조가 앞장섰지만 정부기관이 동원됐다는 비판도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난해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이른바 방송장악 문건에 따라 빈틈없이 진행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영방송 이사진에 대한 인신공격, 노골적인 사퇴압박, 무리한 강행처리가 뒤따라서 절차적 정당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KBS 사장이 해임되는 날 이인호 KBS 이사장이 사퇴 성명서에서 “방송이 특정 정치세력에 장악이 되면 건전한 공론 조성이 불가능해지고, 국민의식이 편협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워짐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개탄한 바 있습니다. 여권 정부 여당 쪽에서는 적폐가 청산이 되고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게 됐다고 평가하지만 공영방송이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락하게 될까 봐 정말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이 정말 언론 본연의 소임이라고 할 수 있는 권력감시, 또 국정 편향 견제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정권을 어떻게 비판할 수 있을지 매우 회의적입니다. 이제 KBS에서도 사장이 새로 선임된다면 MBC처럼 이른바 인적 청소가 대대적으로 벌어질지 벌써부터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MBC에서는 마치 혁명군이 점령한 것처럼 노조와 반대편에 있었던 직원들을 부당전보인사를 내고, 또 해외특파원 전원에게는 3월 초까지 전원 귀국하라는 소환 명령이 떨어져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가족들이 전부 불안에 떨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 정권에 줄을 댄 적폐세력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메인 뉴스 앵커 등은 아예 출근도 못 하고 자택 대기하고 있고, 전임 보도책임자는 중계차 근무, 또 편집부 허드렛일을 시켜서 모멸감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당한 모욕을 그대로 아니, 그보다 더한 정도로 되갚아 준다면 이것이 바로 보복인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또 다른 형태의 블랙리스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본사 임원, 지방사, 계열사 사장도 사임을 받아주지도 않고 퇴직금도 줄 수 없다면서 강제해임 조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적 청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해임의 사유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번 MBC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방문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가 검사·감독권을 발동했듯이 우리 방통위가 현재 사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부터 방문진에 요청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무처가 검토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또 며칠 전에는 MBC가 박원순 서울시장을 예능프로그램 <라디오스타>에 출연시켜서 여당의 서울시장 출마 주자들부터도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유력한 후보가 될 현직 서울시장을 인기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시킴으로써 다른 출마 주자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빼어가는 것일 뿐만 아니라 특정 정파 후보를 유리하게 하고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박원순 시장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10시간 가까이 상위권에 오르는 혜택을 톡톡히 누렸다고 합니다. 지방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둔 시점에 유력 후보가 될 정치인을 공영방송에 출연시킬 결정을 하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선거 앞둔 시점에 정치를 방송 소재로 이렇게 올릴 경우는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방송출연을 금지시킨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제는 방송 출연을 시키는 화이트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을 줄 정도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이런 방송 소재는 반드시 자중·자애해 줄 것을 촉구하고 우리 사무처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고삼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고삼석 상임위원

-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했는데 김석진 위원님께서 의견을 일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론적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방송이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정권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들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해 무시하고 그 과정에 대해 문제 삼는 것에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방송의 특정 정치세력에 의한 장악을 우려하시고, 그래서 공정성 훼손이 우려된다,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전략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정확히 지난 10년 동안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 했던 일입니다. 방송을 특정 정치세력의 수족으로, 그리고 나팔수 역할로 만들어서 정말 공정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정권의 홍보방송은 지난 10년 동안 일상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공영방송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보수정권 10년 동안 있었던 아주 비정상적인 현상들을 정상적으로 바로 잡고, 공영방송이 권력의 방송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마치 정부기관들이 이러한 일들에 다 동원되었고 또 여당의 문건들이 빈틈없이 실행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여당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각 방송사에서 노조와 경영진 사이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우리 방통위가 규제기관으로서 법에 근거해서 절차를 진행했고 결정했던 일, 이것은 분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명백히 별개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뭉뚱그려서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에 근거해서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결정했던 것들마저도 그 정당성·합법성을 훼손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반면 방송이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또 국민의 입장에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향후 정상화될 공영방송에서 과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면 당연히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견제하고 감시하고 또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들을 해 봅니다. 아무튼 지금 고대영 사장이 해임되고 후임사장이 선임될 것입니다. 지난 6, 7개월 동안 공영방송 정상화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정작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책적 현안에 대해 집중해야 할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는 일부 소홀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공개된 회의장소에서 정치적 쟁점화 시켜서 다투는 모습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물론 방송의 공정성·공공성·공적책임에 대해 당연히 저희가 감시·감독 역할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송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이동통신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이러한 문제들을 좀 더 생산적으로 논의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 이효성 위원장

- 표철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 표철수 상임위원

- 방송통신위원회 공식 회의에서 이야기가 나온 것이니까 하나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석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 MBC 지역사 사장들의 사의를 받아주지 않고 해임 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사실인지 다시 한 번 여쭙 봅니다.

○ 김석진 상임위원

- 그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조사를 사무처에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표철수 상임위원

-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회 통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방문진을 통해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특히 저희들이 회의를 하면서 서로 주장하는 것과 사실 여부 이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합니다.

○ 이효성 위원장

- 그 밖에 다른 의견 더 없으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신 내용 중 박 시장님이 MBC에 출연한 문제는 저희 소관이라기보다는 방심위에서 심의로 다루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들도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공정하게 이끌어야겠지만 직접적인 처리는 방심위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다음 회의는 대내외 행사 일정들을 고려해서 별도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폐 회

○ 이효성 위원장

- 이상으로 제2018년도 제5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1시 35분 폐회 】